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5. 6. 25.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용어 정의는 어감을 고려하여 순화 또는 수정·삭제하고,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구의원 추천위원 수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위원추천에 따른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가. 제3호를 삭제함 (안 제2조제3호)

나. “업체의 하수급인이” 를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가” 로 함
(안 제3조제1항제3호)

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함 (안 제5조제2항)

라. “구의원” 을 “구의원 2명” 으로 함 (안 제5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나.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업체의 하수급인이” 를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로 한다.

다. 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라.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구의원” 을 “구의원 2명”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1. 2. (생략)</p> <p>3. 제2호의 기관 및 <u>업체의 하수급인</u>의 고용한 근로자</p>	<p>제3조(적용대상)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u>-----</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u>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u>구의원</u></p> <p>2. ~ 4.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구의원 2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